「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0. 2. 28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 표 이 사 확 인 서]

본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연차보고서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4조, 제22조 및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5조, 제9조에 따라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 2. 28

현 대 해 상 화 재 보 험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이 철 영 (서명)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3) 지배구조의 현황

다. 관련 규정

2. 이사회 ·····7

가. 역할

(1) 총괄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나) 「정관」변경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나. 구성

(1) 총괄

(2) 구성원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 회의 개최내역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의사회 의장 선임 사유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3
가. 역할
나. 구성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2) 후보 추천 절차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 회의 개최내역
(3) 평가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나) 후보제안자
(다) 후보자 추천사유
(라) 자격충족 여부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나) 후보제안자
(다) 후보자 추천사유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마) 자격충족 여부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3)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나) 후보제안자
(다) 후보자 추천사유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마) 자격충족 여부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51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다) 감사위원회
(라) 위험관리위원회
(마) 보수위원회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나) 요약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진영호
(2) 사외이사 김용준

(3) 사외이사 유재권
(4) 사외이사 김태진
(5) 사외이사 김희동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3) 외부평가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진영호
(2) 사외이사 김용준
(3) 사외이사 유재권
(4) 사외이사 김태진
(5) 사외이사 김희동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내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76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2) 비상계획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3) 후보군 현황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6. 감사위원회 ····· 83
가. 역할
(1) 총괄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다) CIAO 관련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마) 기타
나. 구성
(1) 총괄
(2) 구성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 회의 개최내역
(3) 평가
라. 감사보조조직 등
(1) 감사보조조직 설치현황
(2) 보고 및 지원 주요 내용
(3)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7. 위험관리위원회 ····· 93
가. 역할
(1) 총괄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마) 기타
나. 구성
(1) 총괄
(2) 구성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 회의 개최내역
(3) 평가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100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100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 101
가. 총괄
나. 구성
(1) 총괄
(2) 구성원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성과보수 대상자의 결정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2) 활동내역 개요
(3) 회의 개최내역
(4) 평가

2. 보수체계 ·····110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9)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 연도 발생액 기준)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 연도 발생액 기준)

(3) 이연지급액의 보수의 구분(해당 연도말 누적액 기준)

(4) 이연지급액의 형태별 구분(해당 연도말 누적액 기준)

(5) 이연지급액의 보수의 구분(해당 연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 연도별로 구분)

(6) 이연지급액의 조정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8)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9)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10)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 건수 및 금액

※ 별 첨 1. 현대해상「정관」

2. 현대해상「이사회규정」

3. 현대해상「지배구조내부규범」

4. 현대해상「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5.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 함)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현대해상은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으며,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19년말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66.7%)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 · 경영진 · 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 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을 당사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당사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의 공개를 위해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작성하여 연 1회 공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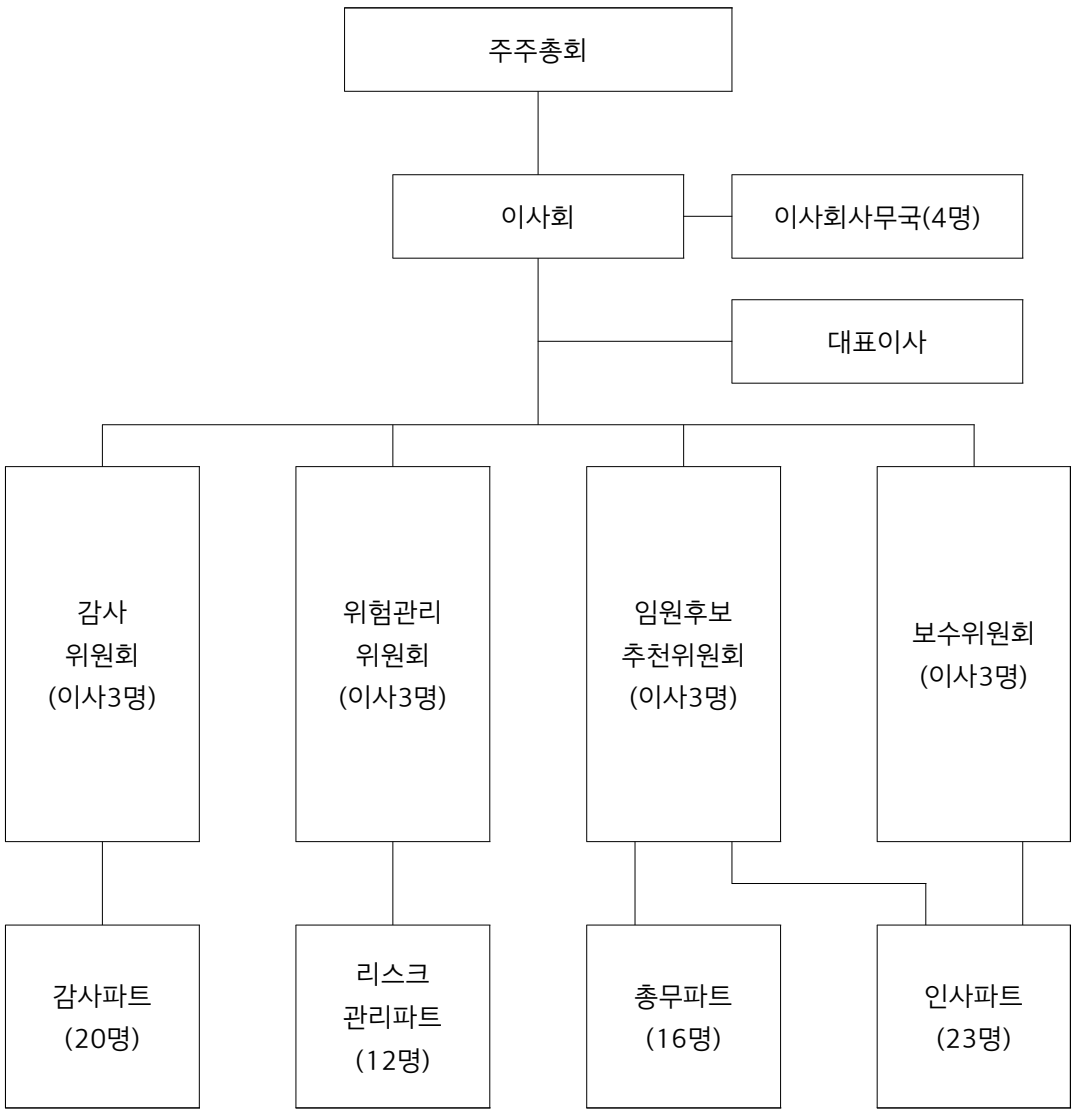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홈페이지 : http://www.hi.co.kr,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http://www.knia.or.kr)

또한 현대해상은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기반하여 지배구조 원칙을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현대해상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회사의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이며, 관계법령, 「정관」, 「이사회규정」 등 주요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사회는 「정관」§26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39, 「지배구조내부규범」§6에 따르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시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이사회는 관계법령 상의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가장 주된 권한인 업무집행결정권과 이사의 감독권 등을 활용하여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말 현대해상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4명으로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이 4명, 66.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대해상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4개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후보의 추천권을 가지며, 임원 후보자 관리,

임원 후보의 추천 및 기타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건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감사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등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기,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기타 리스크관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요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보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보수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보수위원회는 성과보상체계 적용대상 결정, 성과보상 제도의 설계, 적정성 평가 등 회사 내에 발생하는 성과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의 현황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의장 (이름/사내·사외 여부)	관련규정
이사회	○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결의 ○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	4/6	정몽윤 /사내	「정관」§36 「이사회규정」§3 「지배구조내부규범」§9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을 갖춘 者 중에서 임원후보(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추천 ○ 임원후보추천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결정 등	2/3	진영호 /사외	「정관」§35의2, §42 「이사회규정」§13의2 「지배구조내부규범」§2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3
감사 위원회	○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자회사 영업 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외부감사인 선정 등	3/3	김용준 /사외	「정관」§31의2, §31의3, §42 「이사회규정」§13의2 「지배구조내부규범」§18 「감사위원회규정」§3, §4
위험관리 위원회	○ 회사의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 심의·의결 등	2/3	유재권 /사외	「정관」§42 「이사회규정」§13의2 「지배구조내부규범」§19 「위험관리위원회규정」§8
보수 위원회	○ 성과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	3/3	진영호 /사외	「정관」§42 「이사회규정」§13의2 「지배구조내부규범」§20 「보수위원회규정」§5

다. 관련 규정

○ 별첨1. 현대해상 「정관」

○ 별첨2. 현대해상 「이사회규정」

○ 별첨3. 현대해상 「지배구조내부규범」

○ 별첨4. 현대해상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2. 이사회

가. 역할

(1) 총괄

현대해상 이사회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12 및 「상법」§382에 따라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되도록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선임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으로서 소집·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이사회는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 및 「상법」상의 결의사항,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부의하며, 관련규정상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이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대해상은 다양한 분야로부터 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현대해상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15①1, 「정관」§36②1, 「이사회규정」§11②1, 「지배구조내부규범」§9②1)
이에 따라 ’19년 1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20년 경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현대해상은 ’20년 경영방침으로 국내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익 기반의 내실 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을 선도하며, 디지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20년 매출 목표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13조 7,725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나) 「정관」변경

현대해상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15①2, 「정관」§36②2, 「이사회규정」§11②2, 「지배구조내부규범」§9②2)

이에 따라 ’19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정관변경안을 의결하여 ’19년 3월 제65기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당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개정
  : 국내·외 지점의 이전 및 명칭변경에 관한 이사회 권한을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 (「지배구조법」§15 반영)
- 주식,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상법」§356의2, §420의4 반영)
-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상법」§478, §516의7 반영)
-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개정
  : 명의개서 대리인 사무에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 반영(「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14 반영)
-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에 관한 사항 삭제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주주와 등록질권자의 제반정보신고 불필요
- 이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개정
  : 직위명칭 추가
- 감사위원회의 직무 및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0, §12 반영)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현대해상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15①3, 「정관」§36②3, 「이사회규정」§11②3, 「지배구조내부규범」§9②3) 그리고 구체적 실무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년 예산은 ’20년 경영계획과 함께 ’19년 1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19년 가결산 순사업비 2조 5,573억원 대비 약 3.2%증가한 ’20년 순사업비 2조 6,399억원(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1조 232억원)의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과 관련해서는 ’20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19년 재무제표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당기순이익 : 별도기준 2,504억원, 연결기준 2,691억원
- 총 자 산 : 별도기준 45.8조원, 연결기준 46.4조원
- 배 당 : 보통주 액면배당률 176%, 702억원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현대해상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영업의 양수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며(「지배구조법」§15①4, 「정관」§36②4, 「이사회규정」§11②4, 「지배구조내부규범」§9②4),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및 기구 개편 등에 대해 의결합니다. 단, 국내·외 지점 이전 및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19년 3월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이사회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19년 6월 이사회 결의로 해당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19년 5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경영진은 중국 시장의 독자경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의 현지화를 추진하는 합자계약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검토 후 참석이사 6명 중 5명의 이사가 원안에 찬성하며,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19년 11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경영진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채널별, 사업별 특성화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 기구 개편 안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검토 후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며,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현대해상은 「지배구조법」§24에 근거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조직 및 역할, 준법감시인 제도, 내부통제체제, 행동규범,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및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며, 규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지배구조법」§16, 「보험업감독규정」§7-6과 「정관」§42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본정책 및 제반 위험 관리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19년 2월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험관리지침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19년 5월에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19년 9월에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 심사기준금리 신설(안) 등을 심의하였고, ’19년 11월에는 2020 리스크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19년 12월에는 위험관리 제규정 개정(안) 및 2020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현대해상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정책 및 회사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 수준과 허용한도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현대해상 이사회는 ’15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16년 10월 이사회에서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17년 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현대해상은 관계법령 및 내규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지원부서인 인사파트를 통해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현황 등을 보고 받고, 검증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19년 11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현황을 보고받고, 최고경영자 자격, 후보군 관리, 후보자 추천, 경영승계 개시 및 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관계법령 및 내규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이 적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현대해상은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을 위하여 「지배구조법」, 「상법」, 「보험업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상의 기준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일상감시제도를 통해 대주주·임원 등과의 거래에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검토하여 회사의 이익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이해상충행위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임원 등과의 주요 내부거래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승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이사회는 업무 집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 의결권 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 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이사회 결의 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현대해상 이사회의 총원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전체이사의 과반수(최소 3명 이상)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정관」§27).
’19년 3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19년 3월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 및 사외이사 1명이 재선임되고 사외이사 1명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19년 6월 말 사내이사 1명이 퇴임함에 따라 ’19년 말 현재 이사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해상 이사회가 6명으로 운영되는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입니다. 또한 최대원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 운영의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이사를 충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최초 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이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계법령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 「지배구조법」 등 관계법령을 충족해야 하며,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당사 「정관」 및 내규에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구성원

(기준일 ’19.12.31)

성명	사내/사외	직책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정몽윤	사내	이사회 의장	현대해상 사장, 회장	’04.12.1	’22.3.22	181개월	
이철영	사내	대표이사	현대해상 사장, 부회장	’13.2.4	’20.3.22	83개월	위험위[주1)], 임추위[주2)]
진영호	사외	선임사외이사 보수위원장 임추위원장	두산캐피탈 대표이사, 고려대 경영대학 산학협력 중점 교수	’16.3.25	’22.3.22	46개월	보수위[주3)], 임추위, 위험위
김용준	사외	감사위원장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17.3.24	’20.3.24	34개월	감사위[주4)], 보수위
유재권	사외	위험관리위원장	삼일회계법인 전무, 상명대 경영대학 교수	’18.3.23	’21.3.23	22개월	감사위, 위험관리위, 보수위
김태진	사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3.22	’22.3.22	10개월	감사위, 임추위
박찬종 (퇴임)	사내		현대해상 부사장, 사장	’13.2.4	’19.6.30	77개월	
김희동 (퇴임)	사외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13.6.7	’19.3.24	69개월	

주1) 위험관리위원회
주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주3) 보수위원회
주4) 감사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9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81.8%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전 이사회 의안에 대하여 이사들에게 사전 공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요청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한 사전 설명 및 첨부 자료 제공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에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했으며, 그 결과 지난 한해 총 8회의 이사회에서 15건의 보고 및 33건의 의결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이사회 : ’19.2.7(목) (09:00~10:10)

[안건 통지일 : ’19.1.31(목)]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몽윤	이철영	박찬종	김희동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65기(2018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임원회의 위원 변경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나) 제2차 이사회 : ’19.2.28(목) (09:00~10:15)

[안건 통지일 : ’19.2.25(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몽윤	이철영	박찬종	김희동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갱신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차 이사회 : ’19.3.22(금) (09:28~10:05)

[안건 통지일 : ’19.3.18(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몽윤	이철영	박찬종	김희동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 보수 집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기부의 건	-주)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의결권 제한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라) 제4차 이사회 : ’19.5.30(목) (09:00~11:38)

[안건 통지일 : ’19.5.24(금)]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몽윤	이철영	박찬종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합자계약 체결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반대주)	찬성	찬성	가결
2018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청소년희망재단 기부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합자계약관련 자료 보완

(마) 제5차 이사회 : ’19.6.27(목) (09:00~10:35)

[안건 통지일 : ’19.6.20(목)]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몽윤	이철영	박찬종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지점 이전 및 명칭변경 권한 위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자문역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바) 제6차 이사회 : ’19.10.31(목) (08:00~08:50)

[안건 통지일 : ’19.10.22(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몽윤	이철영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이사회내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임원회의 위원 변경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7차 이사회 : ’19.11.28(목) (09:00~10:32)

[안건 통지일 : ’19.11.21(목)]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몽윤	이철영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기구 개편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규 개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책임자(CRO)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선임계리사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문역 선임 및 재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8차 이사회 : ’19.12.26(목) (11:00~12:15)

[안건 통지일 : ’19.12.20(금)]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몽윤	이철영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020년 대물·차량사고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 장기·일반보험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 고객콜센터 상담업무 위탁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임원회의 위원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 경영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현대해상은 이사회가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이사회의 활동내역 등을 기초로 이사회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이는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해상은 ’16년 10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17년 11월 이사회에서 이사회 평가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사회 평가항목은 이사회 구성,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이사회 운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부분별 구체적인 평가사항으로 이사들의 참여도, 전문성, 독립성 등과 경영진 및 지원부서의 이사회 지원수준, 의사결정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18년 이사회에 대한 평가를 '19년 2월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19년 6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19년 이사회에 대한 평가는 '20년 상반기 중 시행하고, 그 결과는 향후 이사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은 사외이사, 사내이사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연 1회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평가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內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의 「바. 사외이사 평가」 참조
- 사내이사 평가 :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內 「2. 보수체계」의 「가. 주요사항」 참조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현대해상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개최되는 첫 회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합니다. 다만,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지배구조법」§13②, 「정관」§39①). 이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의장으로는 현대해상 최대주주이며, ’88년부터 ’96년까지 현대해상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분야 전문가인 정몽윤 사내이사가 ’19년 3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었습니다.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함을 고려할 때 이사회의 의안을 제안하고, 회의전 의안의 적법성·적정성 등 확인 및 이사회 진행 등을 해야 하는 이사회 의장은 사내업무에 밝은자로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하여 업무집행기구인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여 책임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해상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를 위하여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선임사외이사를 ’19년 3월 이사회에서 선임하였습니다. 현재 선임사외이사는 경영 및 금융 분야 전문가인 진영호 사외이사로 ’16.3.25일 최초 선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뛰어난 전문성, 공정성, 충실성 등을 보여주었으며, 다년간의 당사 사외이사 경험을 토대로 선임사외이사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현대해상은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와 관련한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3, §9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회사의 경영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임원후보를 추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후보군 선정 시 관계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적격한 임원후보자들을 발굴하고,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을 통하여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16년 11월 신설된 이후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하여 발굴·관리 및 자격검증을 하였으며,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을 지원부서로부터 보고받아 ’19년 3월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을 지원부서로부터 보고받아 ’19년 3월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 후 정기주주총회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결의하였습니다. ’19년 10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을 지원부서로부터 보고받고, 후보군의 적격성을 검토한 후 ’19년 11월 개최된 이사회에 해당 후보군을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법」§16 및 동법§17에 따라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 총 3명 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6.7%로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위원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격요건이 검증된 임원 후보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19년 중 재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사내/사외	직책	선임일	임기만료일
진영호	사외	위원장	’17.3.24	’22.3.22
이철영	사내	대표이사, 위원	’19.10.31	’20.3.22
김태진	사외	위원	’19.3.22	’22.3.22
박찬종(퇴임)	사내	위원	’13.2.4	’19.6.30
김희동(퇴임)	사외	위원	’17.3.24	’19.3.24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현대해상은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임원 후보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의 소극적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5, 「지배구조법시행령」§7에 대한 적격여부를, 적극적 자격요건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6을 통하여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의 소극적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5, §6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7, §8에 대한 적격여부를, 적극적 자격요건은 「정관」§35 및 「지배구조내부규범」§7, §8에 따라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사외이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 후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후보의 소극적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5, §6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7, §8에 대한 적격여부와 「지배구조법시행령」§16을 통하여 관련 자격 및 경험을 보유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적극적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규정」§8에 따라 법학, 상경계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전문자격증 및 상당기간 실무경험을 보유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현대해상은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의 후보 추천 및 선·해임에 관련한 절차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군의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는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임원 자격에 대한 검증 후 후보군을 구성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후보군을 확인 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 관계법령, 「정관」 등에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이 검증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사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외이사 후보는 「지배구조법」§17④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또한 「지배구조법」§19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추천 시에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임원 후보자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 위한 후보 선정 결의를 하며, 확정된 임원 후보는 주주총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받게 됩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대표이사는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지표로 재무적 성과 및 외부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한 비재무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성과 지표로 조직문화 및 인재양성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부통제 활동 및 금융사고 예방관련 평가항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매년 1회 내부평가를 실시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반영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외이사 재선임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내부평가는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및 지원부서 직원평가로 이루어지며,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 70%를 목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검토 중으로 외부평가기관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외부평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9년 중 총 3회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한해에는 총 3건의 부의안건이 가결되었으며, 총 2건의 보고안건이 있었습니다. 부의안건 중 2건의 안건은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안건으로 위원 본인이 후보로 추천되는 경우 그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19년 2월에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을 지원부서로부터 보고받고, ’19년 3월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19년 3월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 후 정기주주총회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결의하였습니다.

’19년 3월, 1명(진영호 사외이사)의 사외이사와 1명(김희동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에 따라 지원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사외이사 후보군 중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명의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진영호 사외이사) 및 1명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김태진 사외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19년 3월 임기가 만료된 진영호 사외이사는 ’16년 3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경영분야에 대한 탁월한 안목으로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진영호 사외이사는 본인이 후보자로 추천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었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참석위원 2명의 찬성으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19년 3월 법률분야 전문가인 김희동 감사위원인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회규정」§8③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시 다양한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법률분야 전문가인 김태진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19년 3월, 이철영, 박찬종 2명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지원부서로 부터 보고받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철영, 박찬종 후보 2명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박찬종 위원은 본인이 후보자로 추천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었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참석위원 2명의 찬성으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19년 10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및 경영승계 적정성에 대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현대해상은 ’19년 12월말 기준, 총 57명의 사외이사 후보군(경영 14명, 회계 18명, 법률 15명, 기타 10명) 및 총 17명의 최고경영자 후보군(내부 12명, 외부 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2.21(목) (09:00~09:35)

[안건 통지일 : ’19.2.20(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김희동	박찬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주)	찬성	찬성	가결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주)	가결

주) 의결권 제한 : 본인을 사외이사,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의사항

(나)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5.30(목) (08:40~08:55)

[안건 통지일 : ’19.5.24(금)]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김태진	박찬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10.31(목) (10:00~10:28)

[안건 통지일 : ’19.10.22(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김태진	이철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3) 평가

현대해상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회사 지배구조의 주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 1회 위원회 활동내역 등을 기초로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해상은 '16년 10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17년 1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로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평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으로 구분되며, 각 부분별 구체적인 평가사항으로 위원들의 참여도, 전문성, 독립성 등과 경영진 및 지원부서의 위원회 지원수준, 의사결정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는 각 위원의 설문 평가, 평균 참석률 평가, 각 지원부서의 설문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는 위원회가 주도하나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18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19년 2월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19년 6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19년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20년 상반기 중 시행하고, 그 결과는 향후 이사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19년 2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19년 3월 개최된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정기주주총회 직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가) 후보자 인적사항

□ 이철영(李喆永)

① 출생연도 : '50.9.20

② 출신학교

- '69 성남고등학교
- '76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③ 경력

- '03.01 ~ '06.06 : 현대해상 전무
- '06.07 ~ '07.02 : 현대해상 부사장
- '07.02 ~ '10.01 : 현대해상 대표이사 부사장
- '10.02 ~ '13.02 : 현대C&R 등 5개 자회사 이사회 의장
- '13.02 ~ '16.12 : 현대해상 대표이사 사장
- '17.01 ~ 現 : 현대해상 대표이사 부회장

□ 박찬종(朴贊宗)

① 출생연도 : '53.8.12

② 출신학교

- ’72 중앙고등학교
- ’77 서울대학교 불어교육학 학사

③ 경력

- ’03.07 ~ ’04.12 : 현대해상 상무
- ’04.12 ~ ’07.12 : 현대해상 전무
- ’08.01 ~ ’13.02 : 현대해상 부사장
- ’13.02 ~ ’16.12 : 현대해상 대표이사 부사장
- ’17.01 ~ ’19.06 : 현대해상 대표이사 사장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김희동
- 직 책 :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주요경력

’01.09 ~ ’03.02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03.02 ~ ’07.10 :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구성원변호사
’07.10 ~ 現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김희동 사외이사는 현대해상에서 ’13년부터 사외이사로 근무

하였습니다. 해당기간 중 이철영, 박찬종 후보자도 현대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김희동 사외이사가 현대해상에 근무하기 전후, 개별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철영, 박찬종 대표이사는 자격요건과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며, 김희동 사외이사는 양 대표이사가 최고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지배구조법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물론 보험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지식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이철영 후보자는 보험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C&R 등 5개 자회사 이사회 의장 역임을 통해 현대해상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최고경영자로서 임기동안 손익중심의 경영가치를 기반으로 경영전반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통해 회사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박찬종 후보자는 당사 최고경영자로서 임기동안 손익중심의 경영가치를 기반으로 경영전반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통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리스크관리 선제적 대응 및 중장기 사업계획 운영 등을 통해 회사 중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지배구조법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물론 보험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지식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경로

현대해상은 대표이사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영, 박찬종 후보자는 ’18년 1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17명의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며, ’19년 3월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지원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김희동 사외이사의 제안으로 이철영, 박찬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계법령 : 「지배구조법」§5
「지배구조법시행령」§7

- 평가결과 : 이철영, 박찬종 후보자는 현대해상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현대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표이사 자격요건의 충족뿐만이 아니라 「지배구조내부규범」과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통하여 금융에 대한 경험 및 지식보유 여부와 회사 비전의 공유,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철영 후보자는 ’86년 현대해상 입사 이후 경영기획부문장, 재경본부장, 자동차장기보험본부장, 지역본부장 등의 직책을 거치며 보험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3년부터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손익중심의 경영가치를 기반으로 경영 전반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통해 회사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박찬종 후보자는 ’03년 현대해상 입사 이후 직할보험담당임원, 직할보험본부장, 기업보험부문장 등의 직책을 거치며 현대해상의 기업보험부문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3년부터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리스크관리 선제적 대응, 중장기 사업계획운영 등을 통해 회사 중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후보들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9년 2월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정,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③ 본인 소명

이철영, 박찬종 후보자는 이력서 및 결격요건확인서 제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의 관계법령상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선임 이후에는 임원선임심사표, 취임승낙서를 통해 본인소명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19년 3월 이철영, 박찬종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

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해상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철영 후보자와 박찬종 후보를 임기 1년(재선임)의 대표이사로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위원 3명 중 의결권이 있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박찬종 위원은 본인이 후보자로 추천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어있는 김태진 후보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이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라고 함)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어 '19년 3월 개최된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분리 선임되었습니다.

(가) 후보자 인적사항

□ 김태진(金兌珍)

① 출생연도 : '72.10.31

② 출신학교

- '91 일본 동경한국학교
- '95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07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③ 경력

• 일반경력

- ’00.03 ~ ’01.0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01.03 ~ ’07.08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07.09 ~ ’08.08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08.09 ~ ’11.08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11.09 ~ 現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 (당사)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19.3.22 ~ 현재
- 회 사 명 : 현대해상
- 이사회 참석횟수 : 6회 / 6회
-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횟수 : 6회 / 6회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진영호
- 현 직 :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주요경력

’08.12 ~ ’11.12 : 군인공제회 부이사장
’12.03 ~ ’15.11 : 두산캐피탈 대표이사
’15.11 ~ ’18.11 : 두산중공업 고문
’17.11 ~ ’19.07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산학협력중점 교수

② 후보자와의 관계

김태진 후보자가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받기 전까지 진영호 사외이사와의 개별적인 관계는 없었으며, 또한 해당 후보자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전 당사와도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19년 3월 법률전문가 김희동 사외이사의 임기만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8③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해당 자격여부를 검토 후 법률분야 전문가인 김태진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김태진 후보자는 법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탁월한 법률분야의 학식과 높은 실무능력을 가진 법률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경로

현대해상은 사외이사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태진 후보자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계법령 : 「지배구조법」§5, §6, §19
「지배구조법시행령」§7, §8, §16

- 평가결과 : 김태진 후보자는 현대해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현대해상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의 충족뿐만이 아니라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감사위원회규정」에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또는 전문자격증과 그에 따른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업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이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후보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6년 이상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어 「정관」§35③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감사위원회규정」§8③의 감사위원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 여부

㉮ 전문성

김태진 후보자는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변호사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기에 법률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직무공정성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김태진 후보자의 공정성 자격요건 저촉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김태진 후보자는 사외이사 선임 전 현대해상과 거래관계가 없었기에 직무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현대해상과의 거래관계가 없어 직무공정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김태진 후보자는 법률전문가이자 변호사로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외부자문위원, 한국거래소 규율위원회 위원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 연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전문적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해당 후보자가 재직한 다양한 소속기관에서 우수한 평판을 이어오고 있는 점에서 이견이 없던 바, 윤리성·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충실성

김태진 후보자는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으로 이 외의 겸임업무가 없으며,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기에 향후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본인소명

현대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결의사항을 공시할 때에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확인받았으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본인 날인을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선임 이후에는 임원선임심사표 및 취임승낙서 등을 통해 본인소명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태진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김태진 후보자를 임기 3년(신규선임)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재적위원 3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 진영호(陳榮昊)

① 출생연도 : ’58.1.29

② 출신학교

- ’76 대구 경북고등학교
- ’83 영남대학교 무역학 학사
- ’89 일본 와세다대학교 상학 석사
- ’15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③ 경력

• 일반경력
- ’08.12 ~ ’11,12 : 군인공제회 부이사장
- ’12.03 ~ ’15.11 : 두산캐피탈 대표이사
- ’15.11 ~ ’18.11 : 두산중공업 고문
- ’17.11 ~ ’19.07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산학협력중점 교수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 (당사)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16.03.25 ~ 현재

- 회 사 명 : 현대해상
- 이사회 참석횟수 : 30회 / 32회
-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횟수 : 27회 / 29회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박찬종
- 직 책 :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주요경력

'03.07 ~ '04.12 : 현대해상 상무
'04.12 ~ '07.12 : 현대해상 전무
'08.01 ~ '13.02 : 현대해상 부사장
'13.02 ~ '16.12 : 현대해상 대표이사 부사장
'17.01 ~ '19.06 : 현대해상 대표이사 사장

② 후보자와의 관계

진영호 사외이사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박찬종 대표이사는 부사장 및 사장으로 같이 근무하였으나 사외이사 업무 수행 이외에 대표이사 및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진영호 사외이사는 금융계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경영 및 금융분야의

전문가로서, ’16년부터 ’19년 현재까지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뛰어난 전문성, 공정성, 충실성 등을 보여주었기에 연임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경로

현대해상은 사외이사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영호 후보자는 임기만료가 되어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며, 사외이사 후보자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영호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발휘했던 역량과 그동안 보여줬던 인품 등을 감안하여 사외이사 연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계법령 : 「지배구조법」§5, §6
「지배구조법시행령」§7, §8

- 평가결과 : 진영호 후보자는 현대해상 사외이사 후보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현대해상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의 충족뿐만이 아니라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업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 여부

㉮ 전문성

진영호 후보자는 ’19년 3월부터 현대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경영전문가로서 현대해상의 지속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두산캐피탈 대표이사로서 금융 및 경영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직무공정성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진영호 후보자의 공정성 자격요건 저촉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진영호 후보자는 사외이사 선임 전과 재임기간 중에 현대해상과의 거래관계가 없었기에 직무공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9년 3월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현대해상과의 거래관계 없이 직무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진영호 사외이사는 현대해상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사외이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대해상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후보자의 인품과 평판에 있어 이견이 없었던바, 윤리성·책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충실성

진영호 후보자는 ’19년 3월 사외이사로 재선임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산학협력중점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19년 7월 퇴임하였습니다. 당시 겸임업무가 없었으며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았기에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해당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겸임 및 타사 사외이사 등의 겸직 사항 없이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④ 본인소명

현대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결의사항을 공시할 때에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확인받았으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본인 날인을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선임 이후에는 임원선임심사표 및 취임승낙서 등을 통해 본인소명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진영호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진영호 후보자를 임기 3년(재선임)의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위원 3명 중 의결권이 있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진영호 위원은 본인이 후보로 추천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2명이며,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중 1명(진영호 사외이사)이 연임(재선임)하였으며 내부 평가 결과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등 참석률	평가 여부
진영호	’16.3.25 ~ ’19.3.22	연임	94.7%	평가

주) 재임기간 및 참석률은 ’19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임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19년 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진영호 후보자는 상기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의 「(3) 사외이사 후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한 기간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으며,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 1회 시행 하는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외이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당시 재직 중인 사외이사 1명(진영호 사외이사)을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별첨5 :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현대해상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 및 전문적인 식견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경영진, 외부기관, 주요주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및 내규에 정해진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 및 관리하여 연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군 중 사외이사로 선임할 후보에 대하여 최종 승인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결의로 선정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주주총회 의안으로 부의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됩니다.

②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19년말 기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지원부서인 이사회사무국에서 관리중인 사외이사 후보군은 총 57명이며, 해당 후보자들에 대하여 자격검증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는 해당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을 ’19년

10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윈회에서는 해당 후보군 확인 후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③ 후보군 현황

-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10.31(목)

분 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 고
경 영	14	24.6%	
회 계	18	31.6%	
법 률	15	26.3%	
기 타	10	17.5%	
합 계	57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 고
주 주	-	-	
외부자문기관	-	-	
사외이사	2	3.5%	
경영진	1	1.8%	
지원부서	54	95.7%	
합 계	57	100.0%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9년 10월 지원부서로부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받아 임원 자격충족 여부와 적격성을 검토하고,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지원부서 : 이사회사무국

- 담당인원

· 이사회사무국 : 총 4명 (부서장 1명, 차장 1명, 과장 2명)

- 지원내역

’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선임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및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19년 10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사무국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은 위원회의 원활한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을 하였으며, 의사록 등의 회의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위원들의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① 제1차 이사회 : ’19.2.7(목) (09:00~10:1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희동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65기(2018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임원회의 위원 변경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② 제2차 이사회 : ’19.2.28(목) (09:00~10:15)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희동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갱신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③ 제3차 이사회 : ’19.3.22(금) (09:28~10:05)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희동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내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 보수 집행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기부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제4차 이사회 : ’19.5.30(목) (09:00~11:38)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합자계약 체결의 건	찬성	반대[주]	찬성	찬성	가결
2018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청소년희망재단 기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합자계약관련 자료 보완

⑤ 제5차 이사회 : ’19.6.27(목) (09:00~10:35)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지점 이전 및 명칭변경 권한 위임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자문역 선임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⑥ 제6차 이사회 : ’19.10.31(목) (08:00~08:5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이사회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임원회의 위원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⑦ 제7차 이사회 : ’19.11.28(목) (09:00~10:32)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기구 개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규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책임자(CRO)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선임계리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문역 선임 및 재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⑧ 제8차 이사회 : ’19.12.26(목) (11:00~12:15)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020년 대물·차량사고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 장기·일반보험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 고객콜센터 상담업무 위탁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임원회의 위원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 경영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2.21(목) (09:00~09:3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김희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주)	찬성	가결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찬성	찬성	가결

주) 의결권 제한 :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

②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5.30(목) (08:40~08:5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김태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가결

③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10.31(목) (10:00~10:28)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김태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다) 감사위원회

① 제1차 감사위원회 : ’19.2.7(목) (08:25~08:5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희동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찬성	-	찬성	가결

② 제2차 감사위원회 : ’19.2.28(목) (08:20~08:58)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희동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 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제3차 감사위원회 : ’19.4.25(목) (09:00~10: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제4차 감사위원회 : ’19.7.25(목) (09:00~10: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⑤ 제5차 감사위원회 : ’19.11.28(목) (08:26~08:58)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⑥ 제6차 감사위원회 : ’19.12.05(목) (09:00~11: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외부감사인 선임관련의 건(준수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 연간 감사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①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19.2.28(목) (07:40~08:1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유재권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위험관리지침 개정(안)	-	찬성	가결

②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19.5.30(목) (08:00~08: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유재권	진영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지침 개정(안)	찬성	찬성	가결
2019 리스크관리계획 개정(안)	찬성	찬성	가결
2018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 승인(안)	찬성	찬성	가결

③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19.9.26(목) (10:00~11: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유재권	진영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 심사기준금리 신설(안)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지침 개정(안)	찬성	찬성	가결
2019 재보험 및 비전통보험 위험관리 전략 개정(안)	찬성	찬성	가결

④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19.11.28(목) (07:30~08:2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유재권	진영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020 리스크관리계획(안)	찬성	찬성	가결
2020 장기보험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한도, 공시기준이율 산출기준(안)	찬성	찬성	가결
2020 파생금융거래전략(안)	찬성	찬성	가결
2020 재보험 및 비전통보험 위험관리 전략(안)	찬성	찬성	가결

⑤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 ’19.12.26(목) (10:00~10: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유재권	진영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위험관리 제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가결
2020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관리계획(안)	찬성	찬성	가결

(마) 보수위원회

① 제1차 보수위원회 : ’19.2.28(목) (08:00~08: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희동	진영호	김용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② 제2차 보수위원회 : ’19.4.12(금) (11:00~12: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 지급여부 결의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성과보상체계 점검 및 연차보상 평가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추가 공시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성과보수체계 운영 세부지침 개정(案)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③ 제3차 보수위원회 : ’19.6.27(목) (08:30~09: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성과보상 추가 지급 결의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정정 공시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성과보상체계 규정 개정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진영호 사외이사는 ’19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7회 참석하였고(1회는 고려대학교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불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중 3회, 위험관리위원회 4회 중 3회, 보수위원회 3회중 2회 참석하였습니다.(이사회내 위원회 1회는 고려대학교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안건검토,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 ’19년 중 16시간 이상을 활동하였습니다.

진영호 사외이사는 ’19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고 받은 ’18년 소송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당사 변호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준법감시인이 관련 사항을 구두로 답변), 회사 규모가 확대될수록 업무적인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 감사파트, 변호사, 계리사 등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히며 적극적인 소송관리위원회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19년 3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진영호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 의장 업무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몽윤 이사를 추천하였으며, 이사회 의결로써 정몽윤 이사가 임기 1년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진영호 사외이사는 ’19년 11월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2020 리스크 관리계획(안) 심의안건을 보고받고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 활용 사례를 질의하고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속 투자를 당부하였습니다.

김용준 사외이사는 ’19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6회를 참석하였고(2회는 성균관대학교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불참), 감사위원회 6회중 5회, 보수위원회 3회중 1회 참석하였습니다.(이사회내 위원회 각 1회는 성균관대학교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불참) 또한 이사회 및 소위원회 안건검토,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 ’19년 중 14시간 이상을 활동하였습니다.

김용준 사외이사는 ’19년 3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선임사외이사로 당사 사외이사 경험이 풍부하며, 뛰어난 전문성, 공정성, 충실성 등을 보여준 진영호 사외이사를 추천하였으며,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진영호 사외이사를 임기 1년의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19년 5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합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합자에 관한 자료 보완 등을 사유로 본 안건 승인에 반대하였습니다.
김용준 사외이사는 ’19년 4월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 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보고 관련 개선계획 심의 안건을 보고받은 후 사회적 책임경영의 적정성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인원과 계약직 인원에 대해 질의하고(감사실장이 관련 사항을 구두로 답변) 사회적 책임경영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률은 회사의 진정성 지표로 중요하기에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유재권 사외이사는 ’19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6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안건검토,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 ’19년 중 22시간 이상을 활동하였습니다.

유재권 사외이사는 ’19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 연간 감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내부통제 및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19년 5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점차 다양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위험관리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은 물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관리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유재권 사외이사는 ’19년 12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보고받은 2019. 3분기 리스크관리계획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IFRS17 및 K-ICS 등 대외제도 변경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태진 사외이사는 ’19년 신규선임일(’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개최된 이사회 6회 중 6회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4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2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안건검토,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 ’19년 중 14시간 이상을 활동하였습니다.

김태진 사외이사는 ’19년 6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고받은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신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유병력자 시장 및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성장전략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당부하였습니다.(’19.7.17 헬스케어 시장동향 및 당사 추진방향 서면 보고) 또한 김태진 사외이사는 ’19년 10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을 보고받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및 관리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고(총무부장이 추천절차 및 자격검증 등에 대해 구두로 답변) ’19년 4월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 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보고 관련 개선계획을 보고받고 내부통제의 평가절차와 등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준법감시부장이 평가절차 및 등급 산정에 대하여 구두로 답변)

김희동 사외이사는 ’19년 임기만료(’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전까지 개최된 이사회 2회 중 2회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2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보수위원회 1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안건검토,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 ’19년 중 4시간 이상을 활동하였습니다.

김희동 사외이사는 ’19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8년 소송관리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소송제기 추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준법감시인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구두로 설명), 심의 대상 건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검토 등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김희동 사외이사는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군 중 이철영, 박찬종 대표이사 두 명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제안하였고 양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지배구조법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물론 보험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지식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추천사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전원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자료는 회의일 전에 전달받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원 부서에 질의·확인 등의 사전 검토 후 회의에 참석하여 부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요약

구분 / 사외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시간주) (이사회 등 참석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참석률 (%)	시간
진영호	8	7	29	3	3	2				5	4	13	3	2	8	84.2%	16
김용준	8	6	27				6	5	7				3	1	1	70.6%	14
유재권	8	8	33				6	6	9	5	5	14				100%	22
김태진	6	6	27	2	2	1	4	4	3							100%	14
김희동	3	2	6	1	1	1	2	2	6				1	1	1	85.7%	4

주) 사외이사별 이사회등 참석률 70% 이상을 목표로 부여

나. 임원책임배상보험 가입 현황

- 가입사 : KB손해보험

- 가입기간 : ’19. 3. 1 ~ ’20. 2. 29

- 주요담보

·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불법행위 및 합리적인 상식 및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당행위 담보

· 임원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제3자 및 회사의 손해배상 보장

· EPL특약 : 고용주가 각종 부당해고, 차별대우, 성희롱 등을 이유로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입은 손해를 보장

- 보험료 : 자회사분 포함 총 683,401천원 (당사분 659,840천원)

- 보험금 : 700억원 (1회 한도 및 총 한도)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김희동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1.31(목) - 내용 : 제65기 재무제표 주요사항(2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불참 (요청이사 대상)	불참 (요청이사 대상)	불참 (요청이사 대상)	참석	-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2.12(화) - 내용 : 보험회계해설서(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불참 (요청이사 대상)	불참 (요청이사 대상)	불참 (요청이사 대상)	참석	-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3.18(월) - 내용 : 당사 사회공헌 전략 및 현황 세부내용(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불참 (신임 사외이사 대상)	불참 (신임 사외이사 대상)	불참 (신임 사외이사 대상)	불참 (신임 사외이사 대상)	참석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3.18(월) -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및 시장동향(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마.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4.4(목) - 내용 : 현대해상 회사 현황 및 관련사규(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	불참 (신임 사외이사 대상)	불참 (신임 사외이사 대상)	불참 (신임 사외이사 대상)	참석
바.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6.24(월) - 내용 : 1분기 경영실적 및 보험업계 현황(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	참석	불참 (요청이사 대상)	참석	참석
사.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7.17(수) - 내용 : 헬스케어 시장동향 및 당사 추진방향(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10.28(월) - 내용 : 2분기 경영실적 및 보험업계 현황(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자.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11.26(화) - 내용 : 자문역 및 고문 제도 운영규정 안내(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차.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12.3(화) - 내용 : 감사위원회포럼(3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	비대상	불참 (요청이사 대상)	참석	불참 (요청이사 대상)
카.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12.10(화) - 내용 : 2020년 경영환경 및 경영계획 수립절차(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19.12.19(목) - 내용 : 제7회 Audit Committee핸드북(5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	비대상	불참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0	6	5	17	13

주) 상기 '참석'기준은 사외이사별 교육자료 E-MAIL송부 또는 별도자료 배포를 포함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진영호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전문경영인, 경영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충족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
라. 충실성 ('19년 이사회 등 참석률)	충족	84.2%

(2) 사외이사 김용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충족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
라. 충실성 ('19년 이사회 등 참석률)	충족	70.6%

(3) 사외이사 유재권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회계사, 경영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충족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
라. 충실성 ('19년 이사회 등 참석률)	충족	100%

(4) 사외이사 김태진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변호사, 법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충족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
라. 충실성 ('19년 이사회 등 참석률)	충족	100%

(5) 사외이사 김희동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변호사, 법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충족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
라. 충실성 ('19년 이사회 등 참석률)	충족	85.7%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현대해상은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초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임기 중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사외이사 지원부서 평가를 통하여 사외이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 본인, 이사회,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평가기준

이사회평가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로, 사외이사 본인평가 및 사외이사 지원부서 평가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 설문내용으로 사외이사를 평가합니다.

설문서의 평가항목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목표, 보험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 등 사외이사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참여함에 있어서 본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각 항목에 대하여 등급별 점수를 배점하는 방식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평가절차

매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 지원부서에서는 사외이사들에게 평가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서 항목에 의한 평가를 요청하며, 사외이사 지원부서 역시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등을 토대로 동일한 설문지 항목에 의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위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의 평가는 향후 안정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19년도 현대해상은 사외이사에 대하여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사외이사 지원부서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사외이사 모두 회사의 발전과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인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19년도 이사회평가에서는 모든 사외이사가 목표 참석률을 달성하였으며, 지원부서평가 및 자기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총 합산 평균 **96.0점**).
현대해상은 향후에도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3) 외부평가

외부평가는 향후 외부평가기관들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안정적으로 외부평가기관들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가 역임하고 있기에 '19년 3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진영호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진영호 사외이사는 선임사외이사로서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경영이슈 등이 포함된 안건의 부의 및 보고사항이 있을 경우 안건별 이슈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영계획 수립시 거시경제 주요지표 및 경영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사외이사에게 사전 설명토록 요청하여, '19.12월 이사회 개최 전 담당임원인 경영기획본부장은 거시경제 지표 및 경영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사외이사 전원에게 사전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이사회사무국

- 담당인원 : 총 4명(부서장 1명, 차장 1명, 과장 2명)

- 지원내역
  - 사외이사 및 이사회내 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 사외이사 및 선임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및 제반업무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소집시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등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진영호

(가) 재직기간 : ’16.3.25 ~ ’19.3.25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분류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60,000천원	月5,000천원 × 12개월
상여금	-	-
기타수당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905천원	-
차량 제공	-	-
시무실 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2) 사외이사 김용준

(가) 재직기간 : ’17.3.24 ~ ’20.3.24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분류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60,000천원	月5,000천원 × 12개월
상여금	-	-
기타수당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 제공	-	-
시무실 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3) 사외이사 유재권

(가) 재직기간 : ’18.3.23 ~ ’21.3.23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분류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60,000천원	月5,000천원 × 12개월
상여금	-	-
기타수당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 제공	-	-
시무실 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4) 사외이사 김태진

(가) 재직기간 : ’19.3.22 ~ ’22.3.22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분류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46,612천원	月5,000천원 × 10개월(단, 선임월 일할계산)
상여금	-	-
기타수당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 제공	-	-
시무실 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5) 사외이사 김희동

(가) 재직기간 : ’13.6.7 ~ ’19.3.24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분류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13,870천원	月5,000천원 × 3개월(단, 퇴임월 일할계산)
	상여금	-	-
	기타수당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 제공	-	-
	시무실 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 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담당위원회	경 력
조현명	’12.6.7	’15.3.7	감사위원회	감사원 제1사무차장
김동훈	’13.2.4	’16.3.25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송유진	’13.2.4	’17.3.2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김호영	’14.3.14	’17.3.24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더케이예다함상조 대표이사
최병두	’15.3.27	’18.3.24	감사위원장 위험관리위원장	인터내쇼날아웃소싱 대표이사
김희동	’13.6.7	’19.3.24	감사위원장 보수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현)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진영호	’16.3.25	’22.3.22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보수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고려대 경영대학 산학협력 중점 교수
김용준	’17.3.24	’20.3.24	감사위원장 보수위원회	현)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유재권	’18.3.23	’21.3.23	위험관리위원장 보수위원회	현)상명대 경영대학 교수
김태진	’19.3.22	’22.3.22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 담당위원회의 경우 퇴임 사외이사는 퇴임시점 기준, 현재 사외이사는 제출일 기준임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현대해상은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를 통해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시행령」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은 이사회가 연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현대해상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6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지배구조법」§5 및 「지배구조법시행령」§7에 명시한 관계법령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 보유여부와 회사 비전의 공유,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16년 11월 1일 이사회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발하여 자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및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19년 10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19년 11월

이사회에 보고 하였으며, ’19년 12월말 기준 총 17명의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방법으로는 회사경영진 추천, 주주 추천, 기타 추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내부규범」§32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사내 또는 사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 선정 절차는 먼저 기존에 보유한 후보군에 대하여 승계절차 개시 시점에서 소극적 자격요건을 재검증하여 대상 후보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 추천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개시시점부터 최단시일내에 이사회는 신속히 최고경영자 후보를 심의·확정하고,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으로 부의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이 완료되면 이사회의 결의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2) 비상계획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이사회는 신속히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며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8에 따라 즉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는 「정관」§30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압축 및 자격검증을 신속히 수행하고, 경영승계절차 개시 후 최단 시일 내에 최종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추천된 최고경영자 후보를 이사회에서 최종후보로 결정 시 해당 후보가 이사인 경우에는 그 즉시 대표이사 선임을 완료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해당 후보가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선임 절차를 우선 진행합니다. 소집공고 등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신규 이사 선임을 완료한 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계법령 : 「지배구조법」§5,
「지배구조법시행령」§

- 평가결과: 이철영, 박찬종 후보자는 현대해상 대표이사 후보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현대해상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금융회사 임원의 요건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결과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이철영 후보자는 ’86년 현대해상 입사 이후 경영기획부문장, 재경본부장, 자동차장기보험본부장, 지역본부장 등의 직책을 거치며 보험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3년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손익중심의 경영가치를 기반으로 경영 전반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통해 회사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박찬종 후보자는 ’03년 현대해상 입사 이후 직할보험담당임원, 직할보험본부장, 기업보험부문장 등의 직책을 거치며 현대해상의 기업보험부문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3년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리스크관리 선제적 대응, 중장기 사업계획운영 등을 통해 회사 중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후보자들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9년 2월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정,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내역

현대해상은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매년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및 후보군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점검하여 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년 3월로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의결권이 있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철영, 박찬종 후보자를

임기 1년(재선임)의 대표이사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19년 2월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최고경영자 후보로 최종 추천하였으며 ’19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 후 주주총회직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18.11.26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2019. 2.21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결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9. 2.28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이사후보자 확정)	이사회
2019. 3.22	사내이사 선임	제65기 정기주주총회
2019. 3.22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현대해상은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지침에 따라 후보군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압축, 최종후보자 선정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현대해상은 ’19년말 기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총 17명의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지원부서인 인사파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19년 10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원부서인 인사파트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증 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3) 후보군 현황 : 총 17명

-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10.31(목)

구 분		후보군 수	백분율	비 고
내 부		12	70.6%	
외부	금융회사	1	5.9%	
	비금융회사	4	23.5%	
	공공기관	-	-	
	기 타	-	-	
합 계		17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 고
최고경영자	-	-	
이사회	-	-	
주 주	-	-	
외부자문기관	-	-	
기 타	17	100.0%	
합 계	17	100.0%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현대해상은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승계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19년 10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 정한 최고경영자의 자격, 후보군관리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여 적법함을 확인하였으며, 점검결과를 ’19년 11월 이사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현대해상은 최고경영자 승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인사파트를 지원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외에도 인사제도 수립, 채용 및 인력운영, 인재개발 업무와 노무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업무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적고, 인력선발 및 관리, 교육과 관련된 업무지식을 활용하고 있기에 최고경영자 승계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의 역할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검증, 그 밖에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 등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인사파트
- 직원수 : 총 23명
- 담당자 : 총괄 - 부서장 1명, 담당 - 차장 1명, 과장 1명
- 운영내역

일 자	운영내역	비 고
’19. 2.21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10.3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및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보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11.28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및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보고	이사회

6. 감사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체계 및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 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 등의 조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주요 부의안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심의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년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주요 부의안건을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하였고 필요시에는 각 부서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 절차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상법」§412, 「지배구조법」§20④) 법률 또는 「정관」에 반하는 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402)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CIAO에게 감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CIAO는 회계와 업무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결재에 앞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총 34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본사 부서, 사업부, 대인보상부 및 자회사에 대해 총 41회의 일반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 집행을 유도하고, 법규위반 예방활동과 함께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총 271건의 업무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10). ’20년 사업연도는 주기적 지정제에 의하여 삼정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2①에 따라 19.12.27 당사 홈페이지에 외부감사인 선정 공고). ’19년 12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업무단계별 업무수행 및 업무환경의 독립성 침해 요소를 감독하며, 의견교류를 통해 내실 있는 외부감사업무를 유도합니다. ’19년 2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19년 7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19년 11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다) CIAO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규정」§1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CIAO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1. 감사계획, 실시, 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CIAO는 「감사위원회규정」§17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CIAO는 본인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또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하여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는 즉시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상법」§447의4에 따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계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합니다.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8).
’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당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19년 2월 개최한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현대해상은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8①).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542의12, 「지배구조법」§19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 및 해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19년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는 총 3명(김용준, 유재권, 김태진)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배구조법」§19에 따라 공인회계사인 유재권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해상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감사위원회규정」§8③), 이에 따라 각 분야의 경험, 식견 및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CIA)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기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 구성원

성명	사내/사외	직책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용준	사외	위원장	’17.3.24	’20.3.24
유재권	사외	위원	’18.3.23	’21.3.23
김태진	사외	위원	’19.3.22	’22.3.22
김희동 (퇴임)	사외	위원	’13.6.7	’19.3.2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총 6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7건의 보고 및 11건의 의결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 전 의안을 사전통지하여 감사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설명을 진행하여 감사위원이 의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감사위원회 : ’19.2.7(목) (08:25~08:55)

[안건 통지일 : ’19.1.29(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희동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찬성	-	찬성	가결

(나) 제2차 감사위원회 : ’19.2.28(목) (08:20~08:58)

[안건 통지일 : ’19.2.21(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희동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 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차 감사위원회 : ’19.4.25(목) (09:00~10:10)

[안건 통지일 : ’19.4.18(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4차 감사위원회 : ’19.7.25(목) (09:00~10:50)

[안건 통지일 : ’19.7.18(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5차 감사위원회 : ’19.11.28(목) (08:26~08:58)

[안건 통지일 : ’19.11.21(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사) 제6차 감사위원회 : ’19.12.05(목) (09:00~11:20)

[안건 통지일 : ’19.11.28(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용준	유재권	김태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외부감사인 선임관련의 건(준수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 연간 감사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현대해상은 감사위원회가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회사 지배구조의 주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 1회 본 위원회 활동내역 등을 기초로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해상은 ’16년 10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17년 11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써 감사위원회 평가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평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별 구체적인 평가사항으로 위원들의 참여도, 전문성, 독립성 등과 경영진 및 지원부서의 위원회 지원수준, 의사결정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는 각 위원의 설문 평가, 평균 참석률 평가, 각 지원부서의 설문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는 위원회가 주도하나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인 감사파트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19년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19년 2월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19년 6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19년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20년 상반기 중 시행하고, 그 결과는 향후 이사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1) 감사보조조직 설치현황

현대해상은 감사업무의 실질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보조기구로 독립조직인 CIAO 및 감사파트(CIAO 산하)를 두고 있으며, 인원은 ’19년 12월 말 기준 총 22명(CIAO 1명, 감사담당1명, 파트장1명, 검사역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파트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매분기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연 1회 감사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19년 감사파트에서 수행한 주요 감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보고 및 지원 주요 내용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19.2.7	감사위원회	2018년 4분기 감사결과 보고
’19.2.7	감사위원회	2018년 연간 감사결과 보고
’19.2.28	감사위원회	2018년 결산관련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19.4.25	감사위원회	2019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19.7.25	감사위원회	2019년 2분기 감사결과 보고
’19.12.5	감사위원회	2019년 3분기 감사결과 보고
’19.2.25	CIAO	자동차보험 단기계약 금융사고 여부 점검
’19.3.6	CIAO	굿앤굿어린이CI보험 보험금 지급 실태 점검
’19.4.30	CIAO	장기보험 수술 담보 실태 점검
’19.5.9	CIAO	일반손해사정부 업무실태 점검
’19.6.27	CIAO	해외채권 및 파생금융 관리 실태 점검
’19.7.18	CIAO	장애인보험 운영 실태 점검
’19.8.7	CIAO	자동차보험 사고건수요율 적용 실태 점검
’19.9.9	CIAO	대인보상 제지급금 지급실태 점검
’19.11.11	CIAO	기업영업6부 종합감사
’19.12.31	CIAO	일반사업부 종합감사

(3)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본 위원회는 「상법」§415의2 및 「감사위원회규정」§15에 따라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나 ’19년에는 외부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현대해상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의 위험관리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분기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과 전략 수립, 리스크 한도 설정 등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본 위원회는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공정한 심의와 의결 및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산하 조직으로 위험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운영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기타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장은 위험관리책임자(CRO : Chief Risk Officer)이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영기획본부장, 재무기획본부장, 장기상품본부장, 자동차업무본부장, 일반보험본부장, 선임계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중점 추진사항 및 관리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회사가 관리해야 할 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 대비 수익을 고려한 최적의 '자본 및 리스크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9년 11월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리스크관리방침, 지급여력비율, 리스크한도 및 투자한도 설정 등을 검토하여 2020 리스트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을 고려한 통합 및 개별 리스크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의 한도, 공시기준 이율산출 기준 등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도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자본적정성 관리계획과 자산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별 운용한도, 손실한도 등을 설정하며, 정기적으로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와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기 시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19년 2월, 5월, 9월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위험관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9년 12월 본 위원회에서는 위험관리 제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마) 기타

매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 주요사항에 대한 현황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수준과 지표 현황, 지급여력비율(RBC) 및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수준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일본지사와 미국지점의 투자 현황과 신규 투자 내역 등 해외 점포 리스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부문별로 자체 리스크관리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점검합니다.

나. 구성

(1) 총괄

현대해상의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9년 중 재임하였던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사내/사외	직책	선임일	임기 만료일
유재권	사외	위원장	’18.3.23	’21.3.23
이철영	사내	위원	’13.2.4	’20.3.22
진영호	사외	위원	‘16.3.25	’22.3.22

다. 활동 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9년에는 총 5회의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14건, 보고 21건,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19년 위험관리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93%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19.2.28(목) (07:40~08:15)

[안건 통지일 : '19.2.21(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유재권	이철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위험관리지침 개정(안)	-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19.5.30(목) (08:00~08:40)

[안건 통지일 : '19.5.22(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유재권	진영호	이철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지침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9 리스크관리계획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19.9.26(목) (10:00~11:10)

[안건 통지일 : ’19.9.19(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유재권	진영호	이철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 심사기준금리 신설(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지침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9 재보험 및 비전통보험 위험관리전략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19.11.28(목) (07:30~08:25)

[안건 통지일 : ’19.11.21(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유재권	진영호	이철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020 리스크관리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 장기보험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공시기준이율 산출기준(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 파생금융거래전략(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 재보험 및 비전통보험 위험관리전략(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 ’19.12.26(목) (10:00~10:40)

[안건 통지일 : ’19.12.19(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유재권	진영호	이철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위험관리 제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관리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현대해상은 위험관리위원회가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본 위원회가 회사의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 및 관리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본 위원회 활동내역 등을 기초로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해상은 ’16년 10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17년 12월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위원회 평가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의 평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별 구체적인 평가사항으로 위원들의 참여도, 전문성, 독립성 등과 경영진 및 지원부서의 위원회 지원수준, 의사결정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는 각 위원의 설문 평가, 평균 참석률 평가, 각 지원부서의 설문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는 위원회가 주도하나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인 리스크관리파트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18년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19년 2월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19년 6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19년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20년 상반기 중 시행하고, 그 결과는 향후 이사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지배구조와 관련된 대외기관 평가 결과

현대해상은 2019년 ESG 평가결과 통합 A등급 (지배구조 부문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A등급의 의미는 한국기업지배구조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인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현대해상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여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현대해상은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현대해상 「이사회규정」§13의2①을 그 근거로 하여 '10년 10월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10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후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지배구조내부규범」§20 및 「보수위원회규정」§3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3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인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19년말 기준으로 보수위원회는 총 3명(진영호, 김용준, 유재권)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위원장은 진영호 사외이사므로 본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진영호, 김용준 사외이사는 경영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유재권 사외이사는 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직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김희동	위원장	사외이사	없음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진영호	위원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있음	두산캐피탈 대표이사 고려대 경영대학 산학협력중점 교수
김용준	위원	사외이사	있음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 ’19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직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진영호	위원장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있음	두산캐피탈 대표이사 고려대 경영대학 산학협력중점 교수
김용준	위원	사외이사	있음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유재권	위원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있음	삼일회계법인 전무 상명대 경영대학 교수

(2) 구성원

성명	사내/사외	직책	선임일	임기만료일
진영호	사외	위원장	’16.3.25	’22.3.22
김용준	사외	위원	’17.3.24	’20.3.24
유재권	사외	위원	‘19.3.22	‘21.3.23
김희동(퇴임)	사외	위원	’15.3.27	’19.3.24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규정」§9에 따라 보수위원회는 필요 시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련부서 임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고, 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총무지원부문장(담당임원)을 위원장, 관련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보수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 위원은 보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9년 4월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9년 2월에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는 ’18년도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19년 4월에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는 ’18년 성과평가 및 성과보수를 반영하여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9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18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19.2.28(제65기 정기주주총회 : ’19.3.22) 현대해상 및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당시 미확정되었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은 ’19.5.2(성과보수의결 보수위원회 : ’19.4.12) 및 ’19.7.2(성과보수 추가 지급 의결 보수위원회 : ’19.6.27) 공시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9년 4월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는 총보수 중 고정보수와 성과보수의 비중, 성과보수의 평균 이연기간의 적정성을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12에 따라 ’16년 10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 「보수위원회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19년 4월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현대해상의 성과보상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 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 보상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19년 4월 개최된 보수위원회는 연차보상 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상 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국내 : 국내 모든 사업영역
- 해외 : 국외 모든 사업영역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성과보수 대상자의 결정

현대해상은 「보수위원회규정」§5에 따라 본 위원회가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년 12월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적용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상근임원을 임원의 범주로 결정하였고,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그 업무의 투자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클 수 있는 직원은 없다고 판단되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직원은 없으며, 「지배구조법시행령」§17②3에 해당하는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지급받는 직원도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19.12.31)

분류	인원수	직위
임원	1	회장
	1	대표이사(부회장)
	44	사장 이하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6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있으며, 회의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 통지와 회의자료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의 결의는 「보수위원회규정」§8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19년에는 총 3회의 보수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9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위원회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19년 위원회의 평균 참석률은 67% 수준이며, 본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에게는 사전 방문을 통해 안건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19년 2월 보수위원회에서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으며, ’19년 4월 보수위원회에서는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 지급 여부, 성과보상체계 점검 및 연차보상 평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추가 공시에 관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하위 조직으로 인사총무지원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실무위원회는 1차 검토 완료된 각 의안을 위원들과 사전에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한 설명 및 자료를 추가 제공하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해상 보수위원회는 위원들의 높은 참석률, 체계화된 조직,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보수위원회 : ’19.2.28(목) (08:00~08:20)

[안건 통지일 : ‘19.2.21(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희동	진영호	김용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나) 제2차 보수위원회 : ’19.4.12(금) (11:00~12:30)

[안건 통지일 : ‘19.4.9(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 지급여부 결의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성과보상체계 점검 및 연차보상 평가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추가 공시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성과보상체계 운영 세부지침 개정(案)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다) 제3차 보수위원회 : ’19.6.27(목) (08:30~09:00)

[안건 통지일 : ’19.6.20(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진영호	김용준	유재권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성과보상 추가 지급 결의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정정 공시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성과보상체계 규정 개정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4) 평가

현대해상은 보수위원회가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7년 12월 보수위원회의 결의로써 보수위원회 평가기준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1회 보수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평가합니다.

보수위원회의 평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으로 구분되며, 각 부분별 구체적인 평가 사항으로 위원들의 참여도, 전문성, 독립성 등과 경영진 및 지원부서의 위원회 지원수준, 의사결정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는 각 위원의 설문 평가, 평균 참석률 평가, 각 지원부서의 설문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는 위원회가 주도하나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인 인사파트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18년 보수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19년 2월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19년 6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19년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20년 상반기 중 시행하고, 그 결과는 향후 이사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19년 평가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해상 보수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법률 및 경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 리스크관리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2명을 보수위원회의 위원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보수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제반정보와 설명이 적절히 제공되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 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증가율, 투자이익률),

건전성 지표(지급여력비율, 자산듀레이션), 생산성 지표(인건비당 생산성)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민원발생 평가, 외부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가, 회사의 브랜드 선호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계량 지표로는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지급여력비율 등, 비계량 지표로는 조직성과 및 내부통제활동 이행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후 개인별 KPI 및 역량평가 등을 통해 이를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주식과 연계하여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 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와 연계하여 지급합니다.
회사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 경영상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별 책임범위에 상응하여 성과보수를 환수,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지급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의 지급 결정 시 이연지급액에 대한 주식수가 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합니다. 단,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현대해상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 중 고정보상액와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지급되는 기본급은 고정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변동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그 대상자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지급한도와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발생기준으로 총보수의 50%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 지급과 주식연계 지급으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총액의 60%는 3년간 주식과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40%는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60%는 주식연계 방식으로 연도별 이연지급 비율에 따라 1차년도에 20%, 2차년도에 20%, 3차년도에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 : 해당사항 없음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현대해상은 성과주의문화 정착 및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그리고 성과 공유라는 취지 하에서 경영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성과급 제도는 사전에 미리 정해진 회사의 당기순이익의 달성 수준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률이 달라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현대해상은 사업부문별 해당 부문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부문 및 조직평가 결과를 임직원 개인평가 및 보수에 반영하고 있으며, 직전년도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개인의 연봉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성과에 따른 합리적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현대해상은 「보수위원회규정」§9에 따라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9년은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현대해상은 본 위원회의 결의 대상자가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현대해상은 ’19년 6월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원성과보수의 재원과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성과보상체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9)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 해당사항 없음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주1]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주2]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18년)	3,729	6,249	0.6	4,231	0.88
당해 연도 ('19년)	'작성 중' ('20년 5월 15일 공시예정)				

주1) 임직원 보수총액 : 해당 연도말 재직 기준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t-1기의 금액 기준('19년은 '18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기재됨)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	미등기	관리	실무	기타
전년도 ('18년)	보수총액[주1]	53	119	1,857	1,259	441
	성과보수액[주2]	15	21	-	-	-
당해 연도 ('19년)	보수총액	'작성 중' ('20년 5월 15일 공시예정)				
	성과보수액					

주1) 보수총액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기준

주2) 성과보수액 : 해당 연도 발생액 기준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 연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기본급[주2)]	성과보수액[주3)]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18년)	임원[주1)]	44	141.5	35.4	21.2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당해 연도 ('19년)	임원	'작성 중' ('20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1) 임원 : 성과보수 대상이 되는 임원 기준
주2) 기본급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중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된 금액
주3) 성과보수액 : 해당 연도 성과평가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연지급 포함)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 연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18년)	임원[주1)]	35.4	14.2	-	21.2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당해 연도 ('19년)	임원	'작성 중' ('20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1) 임원 : 성과보수 대상이 되는 임원 기준

(3) 이연지급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 연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지급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18년)	임원[주1)]	54.1	13.7	40.4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당해 연도 ('19년)	임원	'작성 중' ('20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1) 임원 : 성과보수 대상이 되는 임원 기준

(4) 이연지급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 연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지급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18년)	임원[주1)]	54.1	-	-	54.1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당해 연도 ('19년)	임원	'작성 중' ('20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1) 임원 : 성과보수 대상이 되는 임원 기준

(5) 이연지급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 연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 연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지급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18년)	임원[주1)]	54.1	21.2	24.3	6.0	2.6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당해 연도 ('19년)	임원	'작성 중' ('20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1) 임원 : 성과보수 대상이 되는 임원 기준

(6) 이연지급액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지급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축소액	직접적 조정	간접적 조정	
전년도 ('18년)	임원[주1)]	4.8	-	4.8	54.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당해 연도 ('19년)	임원	'작성 중' ('20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1) 임원 : 성과보수 대상이 되는 임원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주2)]	1인 기준 최고지급액
전년도 ('18년)	임원[주1)]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당해 연도 ('19년)	임원	'작성 중' ('20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1) 임원 : 성과보수 대상이 되는 임원 기준

주2) 퇴직보수액 : 퇴직금 外 퇴직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함

(8)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 해당사항 없음

(9)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 해당사항 없음

(10)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 건수 및 금액 : 해당사항 없음

별 첨 1

정 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CO., LTD.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2.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3.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외의 겸영가능 업무 또는 보험업의 부수업무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상법상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현지법인을 설치·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단, 국내·외 지점의 이전 및 명칭변경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①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및 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②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의결권 없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2종으로 한다.

제7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②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적배당율을 정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을 한다.
④우선주식의 누적유무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이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삭제>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이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이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이 회사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이 회사의 등기이사는 제외한다)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원 또는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함)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시

정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삭제>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성과목표달성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삭제>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3장 주주총회

제15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6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주주총회의 결의방식)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합병 또는 해산과 이사 및 감사위원의 해임시 출석주주

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 회사는 상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감사위원회

제26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해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전체이사의 과반수(최소 3명 이상)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28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이사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9조(이사의 보선)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의 직무) <삭제>

제3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⑤<삭제>
⑥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31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⑤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1조의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의 보수) ①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감사의 보수) <삭제>

제34조(이사의 책임) ①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 사 회

제35조(사외이사의 자격) ①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삭제>

2.<삭제>

3.<삭제>

4.<삭제>

5.<삭제>

6.<삭제>

②<삭제>

③회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5조의2(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임원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관계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37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

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③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위해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8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9조(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 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③의장이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 의장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소위원회) ①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42조의2(경영위원회) ①이사회결의로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③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2조의3(임원회의) ①이사회결의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임원회의 위원은 상근이사 및 집행간부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임원회의는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자문역 및 고문)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자문역 또는 고문의 보수 및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44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전에 다음의 서류와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7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현금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8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③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외부감사인의 선임) ①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 할 수 있다.
③이 정관은 2009년 6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관 제28조 제1항의 후단 및 제35조는 본 정관 시행 후 선임 또는 연임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관 제44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3년 사업년도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관 제31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6조 제2항은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③부칙 제2항에 따라 제7조 제1항,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7조 제1항,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 첨 2

이 사 회 규 정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6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이사회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39조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회 의

제6조(종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

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 의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송부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결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인의 의견청문)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상법상의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6. 신주의 발행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9.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결의사항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③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1. 건당 40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

2. 건당 40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보험업법상 허용되는 부동산에 한함) 등 주요재산의 취득

3. 장부가기준 40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 및 자회사 주식의 처분

4. 계약 건당 지급수수료가 400억원을 초과하는 도급계약의 체결

5.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

④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의2(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실적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결산관련 선임계리사 검증보고

4. 기타 관련규정상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이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긴급집행) ①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위임) ①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소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정관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 내의 기구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 소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주제별로 심의하여 의결한다. 이사회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변경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13조의2(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한다.

제13조의3(자문위원회) 이사회는 정관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4(경영위원회) ①이사회는 업무집행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경영위원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④경영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별표)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안건,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지원)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 모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단, 단순 용어변경 등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197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규정의 시행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3

지배구조 내부규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하 “회사”라 한다)이 주주와 투자자,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외사항) 본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부법령, 내부규정 및 이사회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본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원”이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정 및 개폐) 이 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다만, 법령개정, 단순한 용어변경 등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제5조(이사회의 구성) ①회사의 이사는 4명 이상으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임기 1년의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의장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자 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③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④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①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17조 ④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9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중요업무 집행에 관하여 결의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회사 경영을 지원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영실적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결산관련 선임계리사 검증보고
4. 기타 관련규정상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이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②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법률, 회계, 경영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절 이사의 선임,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1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해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 총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을 재직할 수 없다.
②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조(이사의 퇴임) ①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사임
3.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된 경우
②이사의 퇴임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규정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에게 소집통지하여야 한다.

④의장이 아닌 다른 이사는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의결권의 행사)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이사회 결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①항의 평가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③위 ①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7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위험관리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②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절차는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감사위원회) ①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명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관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6. 자회사에 대한 조사
7.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④기타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위험관리위원회) ①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단,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반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9.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 지점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한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20조(보수위원회) ①보수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보수위원회는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보수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임원 후보자 발굴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⑤기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사외이사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이사회내 위원회는 연1회 각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각 위원회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회는 ①항의 평가결과를 각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③위 ①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각 위원회는 ①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4조(임원의 자격요건) ①사내이사, 비상임이사,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②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상근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26조를 준용한다.
⑤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25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②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 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상근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제26조(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준법감시인은 권한과 의무는 내부통제기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준법감시인의 권한
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나.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 제출 요구
다.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라.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해 유관 부서에 시정 요구
마.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의견 표명
바.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사.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 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자. 법령에서 준범감시인의 직무로 규정한 업무
차. 기타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법감시인의 의무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이 기준의 위반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제27조(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업무범위 등) 및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8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의 선임에 대해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②상근감사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제17조 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에 의해 선임되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2년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퇴임) ①이사의 퇴임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다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
1. 사임
2.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회사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31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임 임원에 대해 업계 현황, 사업계획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 한다.
②회사는 임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영현황 등과 관련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③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수시로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32조(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임원(대표이사, 업무집행책임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자에 대하여 사내 또는 사외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임원 선임 시 해당결과를 참고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32조(임원의 성과평가) ①보수위원회는 임원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정한다.
②임원에 대한 평가는 연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보수에 반영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고정보수, 성과보수 등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5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영승계와 관련된 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②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6조(경영승계 절차 개시) ①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추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도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시점에 인사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받아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비상상황시 경영승계) ①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이사회는 신속히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②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영구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이사회는 신속히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38조(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①회사의 인사업무 담당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②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검증
2.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정 관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39조(최고경영자의 자격) ①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40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1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2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

를 확립한다.

②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최고경영자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를 명문화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16.11.1.부터 시행한다.

별 첨 4

최 고 경 영 자
경 영 승 계 규 정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최고경영자 부재시의 경영공백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 용어변경 등 실제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금융회사 임원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③다만 제1항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①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매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다만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후보군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사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③인사부서는 매년 1회 이상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승계 절차 개시) ①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추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도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시점에 인사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 받아, 제6조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승계 절차) ①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8조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③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제10조(비상상황 발생 시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이사회는 신속히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며 제8조에 의거하여 즉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5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현대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자로 진영호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영호 사외이사]

- 소극적 자격요건(법률상 자격요건) : 충족
- 적극적 자격요건 : 충족

전문성	경영분야 전문가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함 (경영전문인)
직무공정성	현대해상과의 거래관계가 없으며,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시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함
윤리·책임성	높은 책임감으로 현대해상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평가함
충실성	'18년 이사회 및 소위원회 활동은 94.7%의 참석률을 보이며 직무수행의 충실성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함
외부평가	학계 및 재직 중인 대학교의 교직원으로부터의 평판이 우수함

2019. 2. 2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진 영 호 (인)